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53 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발의자	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	제출년월일	2018.11.21.
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충열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서초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 입
 - 일반회계 출연금, 용자회수금, 이자수입 등
- 지 출
 - 고유목적사업, 용자금, 예치금 등

3.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도 말 조성액 ㉑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㉒=㉑+㉓-㉔	증 감 ㉕=㉒-㉑	증감률 (%)
		수입㉓	지출㉔			
기금총계	203,726,290	18,751,750	20,631,521	201,846,519	△1,879,771	△0.92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용계획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부서에 15개 기금이 있는데, 이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 부서에 6개 기금이 있음

2018년말 조성액은 1,640억 97만 7천원, 2019년도에는 수입 99억 4,080만 9천원, 지출 60억 9,958만 2천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1,678억 4,220만 4천원으로 올해 대비 2.34% 38억 4,122만 7천원 증가함

1. 기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기금명 (재건위 소관)	2019년 수입계획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173,941,786	1,864,255	77,577	164,000,977	3,079,137	4,919,840
청사건립기금	107,258,706	0	0	105,328,197	1,930,509	0
통합관리기금	47,983,495	0	0	47,107,967	875,528	0
옥외광고발전기금	3,108,750	0	0	2,370,202	43,848	694,700
식품진흥기금	2,310,537	0	77,577	2,082,960	30,000	120,000
도로국책복구기금	5,052,698	0	0	887,558	60,000	4,105,140
재난관리기금	8,227,600	1,864,255	0	6,224,093	139,252	0

나. 지출계획

기금명 (재건위소관)	2019년 지출계획					
	계	비용자성 사업비	용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173,941,786	5,849,582	250,000	0	167,842,204	0
청사건립기금	107,258,706	0	0	0	107,258,706	0
통합관리기금	47,983,495	0	0	0	47,983,495	0
옥외광고발전기금	3,108,750	741,931	0	0	2,366,819	0
식품진흥기금	2,310,537	282,565	250,000	0	1,777,972	0
도로굴착복구기금	5,052,698	4,125,086	0	0	927,612	0
재난관리기금	8,227,600	700,000	0	0	7,527,600	0

2. 수입·지출계획 분석

- 2019년도 수입계획은 총 1,739억 4,178만 6천원이며, 내역은 전입금 18억 6,425만 5천원, 용자금회수 7,757만 7천원, 예치금 회수 1,640억 97만 7천원, 이자수입 30억 7,913만 7천원, 기타 수입 49억 1,984만원이며,
- 2019년도 지출계획은 총 1,739억 4,178만 6천원이며, 내역은 비용자성사업비 58억 4,958만 2천원, 용자성사업비 2억 5천만원, 예치금 1,678억 4,220만 4천원임

3. 각 기금별 운용계획

1) 통합관리기금(기획예산과)

○ 설치목적 :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공공목적사업 또는 재정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함

○ 설치년도 : 2007년

○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2018년도 말 조성액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통합관리기금 (기획예산과)	47,107,967	875,528	0	47,983,495	875,528

2) 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계획과)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설치년도 : 2011년(조례제정 2011. 8. 4)

○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기 금 명	2018년도 말 조성액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계획과)	2,370,202	738,548	741,931	2,366,819	△3,383

3) 행사건립기금(도시디자인과)

○ 설치목적 : 서초구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함

○ 설치년도 : 2001년

○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2018년도 말 조성액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청사건립기금 (도시디자인과)	105,328,197	1,930,509	0	107,258,706	1,930,509

4) 재난관리기금(안전도시과)

- 설치목적 :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등
- 설치년도 : 2006년(조례제정 2006. 5. 4)
-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기 금 명	2018년도 말 조성액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재난관리기금 (안전도시과)	6,224,093	2,003,507	700,000	7,527,600	1,303,507

5) 도로굴착복구기금(도로과)

- 설치목적 :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 설치년도 : 1999년(조례제정 1999. 5. 20)
-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기 금 명	2018년도 말 조성액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과)	887,558	4,165,140	4,125,086	927,612	40,054

6) 식품진흥기금(위생과)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설치년도 : 2000년(조례제정 2000.12.30)
-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기 금 명	2018년도 말 조성액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2,082,960	227,577	532,565	1,777,972	△304,988

4. 기금 운용계획 검토의견

- 내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개정(2018. 12. 28)에 따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기획재정국”이 포함되면서 관련 “통합관리기금”이 새로 편입되고, 아울러 문화행정국(행정지원과) 소관이었던 “청사관리기금”이 도시관리국(도시디자인과)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폐지되었음
- “통합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900,679천원이 증액된 478억 8,34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 기금은 2007년 설치 편성 이후 현재까지 일체의 사용실적이 없었으며,
- “청사건립기금”은 전년 대비 1,930,509천원이 증액(기금적립금 이자분)된 107,258,706천원으로 편성되고,
- “재난관리기금”은 수입 2,003,507천원에 지출 7억원을 계획하여 전년도 대비 1,303,507천원이 증액된 7,527,600천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을 약 18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예치금 약 18억원 정도만을 편성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할 것으로, 지진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구 재정 상황의 호전에 상응하는 비례적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확충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임

※ 최근 3년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186,425,452천 원 x 1/100 = 1,864,254,520원

-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227,577천원 및 지출 532,565천원으로 전년 대비 304,988천원이 감소된 1,777,97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6년(2,462,768천원), 2017년(2,017,901천원), 2018년(2,082,960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1,777,972천원으로 수년에 걸쳐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기금 적립금도 계속적 감소 추세이므로, 기금의 안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해 보임
- 한편, 우리구는 전체 15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약 2천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의 비율이 약 30%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으며, 지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용실적이 전무한 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의 금액 과다 문제점, 기금 통폐합에 따른 기금 축소의 개선방안 권고 및 구의회 자치법규연구회에서 기금 관련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차회 관련 연구에 따른 보완 등이 필요해 보임

서초구 기금설치 근거 연왕

연 번	기 금 명	설 치 년 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소 관 부 서
1	통합관리 기금	2007	공공목적사업 또는 재정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공급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기획 예산과
2	청사건립 기금	2001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연차적 확보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 지원과
3	체육시설 수익적립 기금	2002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충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문화체육 관광과
4	중소기업 육성기금	1993	중소기업의 육성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자리 경제과
5	사회복지 진흥기금	1998	사회복지 수준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 정책과
6	사회복지 기금	2015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 지원을 통한 자립 ·자활 도모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복 지과 어르신 청소년과
7	보육기금	2016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 인프라 구축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성 보육과
8	양성평등 기금	2008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여성 보육과
9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995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소요비용 확보 및 재활용품 사용 활성화 유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소 행정과
10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991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대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청소 행정과
11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기금	20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처리시설 설치 재원 확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청소 행정과
12	옥외광고 발전기금	2011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 계획과
13	화훼 및 농업육성 기금	1998	화훼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공원 녹지과
14	재난관리 기금	2006	재난 예방활동 및 응급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안전도시 과
15	도로굴착 복구기금	1999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도로법』 제38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로과
16	식품진흥 기금	2000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 건강증진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위생과

2019년도 서소구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연번	기금명 (부서명)	2018년도말 조성액 (a)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e)=(d)-(a)
			수입 (b)	지출 (c)		
	합계	202,664,942	19,182,811	19,224,350	202,623,403	△41,539
1	통합관리기금 (기획예산과)	46,174,748	908,068	0	47,082,816	908,068
2	청사건립기금 (행정지원과)	105,328,197	1,930,509	0	107,258,706	1,930,509
3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문화체육관광과)	1,078,525	480,163	907,000	651,688	△426,837
4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경제과)	3,287,905	2,720,928	3,850,000	2,158,833	△1,129,072
5	사회복지진흥기금 (복지정책과)	376,272	7,040	72,000	311,312	△64,960
6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3,455,705	61,442	117,840	3,399,307	△56,398
7	보육기금 (여성보육과)	2,092,000	5,080,000	6,800,000	372,000	△1,720,000
8	양성평등기금 (여성보육과)	2,953,572	54,641	200,000	2,808,213	△145,359
9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청소행정과)	3,092,436	252,312	798,545	2,546,203	△546,233
10	환경미화원재녀화자금대여기금 (청소행정과)	599,765	20,827	77,000	543,592	△56,173
1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청소행정과)	24,576,010	454,656	0	25,030,666	454,656
12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계획과)	2,195,648	942,023	808,524	2,329,147	133,499
13	화훼및농업육성기금 (공원녹지과)	1,474,481	25,686	200,000	1,300,167	△174,314
14	재난관리기금 (안전도시과)	5,077,921	1,862,692	700,000	6,240,613	1,162,692
15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과)	867,759	4,144,120	4,124,321	887,558	19,799
16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2,017,901	255,076	569,120	1,703,857	△314,044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4.(생략)
 5. 기금의 설치·운용
 6. ~ 11.(생략)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 항목 및 세부 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 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 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 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